



# 일본의 여행계약에 관한 법제

■ 신청기관 :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I.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1964년 해외여행의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자 수가 대체로 증가세였으나, 2001년 테러의 영향, 2003년 SARS,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큰 감소를 하다가,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우려됐지만 지속해서 증가해 2012년에는 과거 최고의 해외여행자 수를 기록했다.<sup>1)</sup> 이와 같은 해외여행자 수의 증가로 2012년도 일본여행업협회의 고충신청 건수는 2,260건(전년

1)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2013년도 여행업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해외여행자 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에 있고, 방일의 국인 여행자 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2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일본의 해외여행자 및 방일외국인 여행자 수 현황〉

해외여행자 수		방일외국인 여행자 수	
년도	인원	년도	인원
2008년	15,987,250명	2008년	8,350,835명
2009년	15,445,684명	2009년	6,789,658명
2010년	16,637,224명	2010년	8,611,175명
2011년	16,994,200명	2011년	6,218,752명
2012년	18,490,657명	2012년	8,367,872명

※ 출처 : 日本旅行業協會(JATA), 『數字が語る旅行業2013』, 2013. 6, 42면.



도 2,543건)으로 그 가운데 상담이 1,764건, 알선은 496건이었다. 아울러, 여행소비자 이외로부터의 신청은 소비자센터에서 660건(전년도 662건), 여행업자가 1,121건(전년도 1,215건)이었다.<sup>2)</sup> 이와 같은 여행계약상의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여행계약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은 없으나, 여행계약과 관련한 입법으로 1952년 여행업자의 규제에 중점을 둔 여행주선업법을 제정하고 1983년에는 여행자보호에 중점을 둔 여행업법 개정과 표준여행업약관을 제정하였다. 이후, 1996년에는 여행업 등록제도의 간소화와 여행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규정을 신설하여 여행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고, 2005년에는 기획여행을 모집형 기획여행과 수주형 기획여행으로 분류하고 여행사의 보상책임과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업무내용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있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도 여행인구의 지속적인 증가<sup>3)</sup>에 비례해서 여행분쟁<sup>4)</sup>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계약은 각종의 관광 관련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해결되고 있을 뿐이다.<sup>5)</sup> 우리나라는 여행계약에 관한 입법으로 2001년 11월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을 마련하여 2004년 10월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민법개정안을 법무부가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롭게 민법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 여행계약을 포함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4년 3월 25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여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행업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행업법안<sup>6)</sup>이 2013년 3

- 2) 고충 신청내용의 상세한 유형별 건수는 日本旅行業協會(JATA), 『數字が語る旅行業 2013』, 2013. 6, 40면 이하 참조.
-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출입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내국인의 출국 해외여행객 수는 1,480만 명, 외국인의 입국 외래여행객 수는 1,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이에 대한 상세한 관광통계는 <http://www.tour.go.kr/> 참조). 아울러,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여행에 참가한 여행객 수는 3,69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3. 05. 224면 참조.
- 4)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구제 접수 통계를 살펴보면, 해외여행 출국자 수에 비례해서 피해구제 접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아래의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연도	피해상담 건수(건)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단위 %)			
		계약취소거부	일정 임의변경	부당요금청구	기타
2010	7,948	40.3	12.0	4.3	43.3
2011	10,119	52.2	14.2	2.2	31.4
2012	10,087	58.5	11.2	1.7	28.6

※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12년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5) 우리나라에서 여행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특별법으로는, 관광진흥법(일부 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3. 5. 28, 법률 제11840호), 소비자기본법(일부 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78호) 등이 있으며, 관련된 약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된 국내·외 여행표준약관(일부 개정 2003. 1. 29)이 있다.
- 6) 여행업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제안이유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2014. 04. 20 방문).

월 4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여행계약에 대한 법해석과 판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행계약에 대한 경험과 입법화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는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여행계약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행계약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중, 사회실정과 법률제도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여행계약에 관한 법제로서 일본의 여행업 법 및 표준여행업약관의 주요특징과 여행업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입법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행계약법을 제정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일본의 여행계약에 관한 법·제도 현황

### 1. 입법

일본에서 시행 중인 여행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으로는 여행업법과 국토교통성 고시에 의한 표준여행업약관이 있다. 여행업법은 국가와 여행업자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표준여행업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규정한 것이다.<sup>7)</sup> 현행 일본 여행업법<sup>8)</sup>은 1952년 7월 18일 「여행주선업(1952년 법률 제239호)」에 기초한 것이고, 지금까지 약30회에 달하는 개정을 거쳐 최근 2009년에 개정했다.<sup>9)</sup> 1952년의 「여행주선업법」은 여행업의 등록 및 영업보증금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행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1971년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해외여행제한의 완화, 항공업계의 발전 등으로 일반국민의 여행참가가 증가하고 여행업계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행업자의 거래형태가 기차표, 항공

7) 일본의 여행업법 및 표준여행업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島十四郎, 「旅行あつ旋契約(手配旅行契約)·主催旅行契約」, 『現代契約法大系』 第7卷, 1985, 94면 이하; 高橋 弘, 「旅行業約款-主催旅行契約を中心として」, 『法律時報』 第54卷 第6號, 1982, 24면 이하 참조.

8) 현행 일본 여행업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여행업(제3조~제22조), 제3장 여행업협회(제22의2~제22조의 24) 제4장 잡칙(제23조~제27조) 및 제5장 벌칙(제28조~제3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香取幸一, 「旅行業法と規制緩和に関する一考察」, 『玉川大学経営学部紀要』 第19号, 2012年, 2면 이하 참조; 상세한 조문 참조는 <http://www.jata-net.or.jp/membership/> (2014. 4. 20).

9) 일본 여행업법의 변천과정 및 개정배경에 따른 상세한 내용으로는 森住正明, 「旅行契約の特殊性と旅行業法に関する一考察」,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 第15号, 2009. 12, 61면 이하 참조; 廣岡裕一, 「旅行業法の變遷 - 旅行業法に改題後の1982年と1995年の改正-」, 『政策科學』 13-1, 2005. 10, 107면 이하 참조.

권 판매, 숙박시설의 수배 등의 단순한 알선업무에서 각종의 여행서비스를 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바뀐에 따라 여행업법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이 1971년 개정법에 의해 현행 여행업법의 골격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해외여행객수의 증가와 더불어 기획여행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기획여행 참가자와 여행업자간의 분쟁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여행업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2년 여행업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이때 기획(주최)여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의 책임을 가중하여 기획여행 참가자의 보호를 도모하였다. 2009년 여행업법 일부 개정에는 일본 여행업계의 외부로부터의 경쟁과 여행자의 증가추세 둔화, 여행상품가격의 하락, IT산업의 발전으로 여행상품의 판매방법에 대한 변화 등에 따른 여행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여행업의 종류를 기획여행과 수배여행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존의 여행업무 취급주임자제도를 여행업무취급 관리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행업무 취급관리자가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업무에 관해 광고할 경우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타인을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체결하는 여행업무 취급에 관한 여행계약에 대비하여 미리 여행업약관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의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에서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대신이 표준여행업약관을 정해 공시한 경우(이를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를 포함)에 여행업자가 표준여행업약관과 동일한 여행업약관을 정하거나, 실제 정한 여행업약관을 표준여행업약관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한 때는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준여행업약관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국가와 여행업자와의 법률관계를 여행업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고, 여행자와 여행업자와의 거래관계는 표준여행업약관<sup>11)</sup>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일본의 여행업법과 표준여행업약관의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0) 佐々木正人, 『旅行の法律學』, 日本評論社, 1996, 2~3면; 廣岡裕一, 「旅行あつ旋業法の制定と旅行業法への改正 - 1952年の制定と1971年の改正 -」, 『政策科学』 11 - 1, 2003, 119~120면.

11) 종래 여행계약에 관해서는 일본여행업협회(JATA)가 작성하여 권장한 '모델약관'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 후 여행거래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약관의 규제 필요를 느껴 1979년 운수성 관광부에 여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약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약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여 1983년 초에 여행업제도검토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제출한 표준여행업약관안을 승인하고, 1983년 2월 14일 운수성이 이 표준여행업약관을 공시하고(운수성 고시 제59호), 같은 해 7월 1일 이후의 주최여행에 이를 적용하였다.

## 2. 일본 여행업법의 주요특징

### 1) 목적

일본 여행업법의 제정목적은 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여행업자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조직단체의 적절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공정의 유지, 여행안전의 확보 및 여행자의 편리증진을 도모하여, 여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여행업법의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즉, 현재의 여행업법은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공정의 유지, 여행의 안전 확보, 여행자의 편리증진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제도의 실시, 여행업무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 및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직하는 단체의 적절한 활동의 촉진 등 3가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게 하고 그에 관한 제규정이 정비되어 있다.<sup>13)</sup>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은 여행자의 권리보호보다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관광진흥법 제1조).

### 2) 여행업의 정의 및 여행업종의 구분

일본의 경우 여행업의 정의과 관련하여 단순히 여행상품을 알선하는 형태와 여행업자가 여행현지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행소비자에게 중개 또는 전문적인 여행상담에 응하는 행위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sup>14)</sup>

여행업종의 구분은 여행업종을 제1종, 제2종, 제3종 및 여행업자 대리업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제1종 여행업은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상품기획 및 판매를 담당하고, 제2종 여행업은 해외여행상품의 판매와 국내여행 상품의 기획 및 판매를 담당하며, 제3종 여행업은 해외 및 국내여행의 수배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업자 대리업은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의 판매만을 담당하게 하여, 일본은 여행업의 도·소매업을 분리하고 있으며, 여행 대리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관

12) 日本旅行業法 第1條.

13) 香取幸一, 「旅行業法と規制緩和に関する一考察」, 『玉川大学経営学部紀要』 第19号, 2012年, 2면.

14) 日本旅行業法 第2條.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 등으로 구분<sup>15)</sup>하고 있으나, 여행 도매업과 소매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 3)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업의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여행업 등록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여행업법에서는 등록유효기간, 등록 실시, 등록거부, 유효기간 갱신등록, 변경등록 등의 세무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등록신청 시, 기획여행 업무형태 유무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관청의 등록거부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여행업 또는 여행업자 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등록신청 전 5년 이내에 여행업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행한 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행업자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선임 및 재산적 기초의 확보에 등록 여행업자는 항상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sup>17)</sup>

### 4) 영업보증금제도

영업보증금제도의 핵심은 등록제도와 일체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 여행업법은 여행업자가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행보증금을 공탁하고 기재한 공탁서 사본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대신에 신고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영업보증금은 공탁하므로 여행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 예치하여야 하며, 다시 인출하거나 그 유용도 할 수 없다).<sup>18)</sup> 보증금액의 기준은 해당 여행업자의 전 사업연도의 여행업무에 관한 여행자의 거래금액에 의하여 사업범위별로 여행업무에 관한 여행자와의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 공탁한 영업보증금이 관할관청의 개정요청에 따라 공탁요청금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감액에 따른 차액을 추가 공탁 내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탁금 대체수단으로서 국채 및 지방채 증권, 주무관청이 정한 유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참조.

16) 日本旅行業法 第19條 第1項 참조.

17) 香取幸一, 「旅行業法と規制緩和に関する一考察」, 『玉川大学経営学部紀要』 第19号, 2012, 2~3면 참조.

18) 森住正明, 「旅行契約の特殊性と旅行業法に関する一考察」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 第15号, 2009. 12, 60면 참조.

가증권으로도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서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은 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sup>19)</sup>

## 5) 여행종사원 자격 및 관련 자격제도

여행업자 또는 여행업 대리업자는 영업소별로 ‘여행업무 취급관리자’를 선임해서 해당 영업소의 여행업무를 총괄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거래에 관련된 거래조건의 명확성, 여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의 확실성, 그 외의 공정한 거래, 안전한 여행 및 여행자의 편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자격으로는 국내여행 업무만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있어서 종합여행업무 취급관리자 시험 또는 국내여행 업무취급 관리자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한편 여행업자는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에 대해 업무관련 필요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종사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여정관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또 여행의 목적지를 감안해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여정관리업무의 실무경험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등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을 갖게 되고, 아울러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0)</sup>

## 6) 기획여행 및 과대광고의 금지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여행자에 대한 운송 등 서비스의 확실한 제공, 여행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체서비스 수배, 기타 해당 기획여행의 원활한 실

19)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참조.

20) 관광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참조.

시를 확보하기 위해 여정관리를 위한 조치<sup>21)</sup>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의10). 그리고 여행업자 등은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할 때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등 서비스의 내용, 여행자가 여행업자 등에게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관한 사항, 인솔자의 동행 유무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행업자가 여행업무에 관해서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된 여행서비스의 내용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또는 실제보다도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여행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여행업자의 사업영역과 규모에 관한 사항의 범주 내에서 과대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여행상품의 '추가경비'와 관련한 표시 규정의 내용이 과장광고 유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22)</sup>

## 7) 여행업협회제도

국토교통대신은 여행업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업무의 전부에 대해 적정한 계획을 갖고 또한 확실하게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때는 여행업협회로 지정할 수 있다. 여행업협회의 주요업무로는 ① 여행자 및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의 여행업자 등이 취급한 여행업무에 대한 불만 해결, ② 여행업무 취급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연수, ③ 여행업무에 관해 회원인 여행업자 또는 해당 여행업자를 소속 여행업자로 하는 여행업자의 대리업자와 거래를 한 여행자에 대해 그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에 관해 변제를 하는 업무, ④ 여행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여행업자 등에 대한 지도, ⑤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공정의 확보 또는 여행업 및 여행업자의 대리업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의 의무를 실시하도록 부과시키고 있다. 이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직접적인 행정지도에 의하지 않고, 업계 단체의 자주적인 활동에 의해 여행업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1) 日本旅行業法 施行規則 第32條.

22) 우리나라의 여행상품에 대한 과대과장 광고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광고에 제시한 여행상품 가격 외에 추가경비가 있음에도 광고에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추가경비 유무'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 추가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추가경비가 광고에 제시된 여행상품 가격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광고상 제시한 가격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등 세금 명목의 추가비용을 실제 금액보다 과도하게 기재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3. 일본 표준여행업약관의 주요특징

일본의 표준여행업약관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해 보면, 수주형 기획여행에 관한 규정, 계약 책임자에 관한 규정, 여행참가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요하는 여행자의 신청, 여정변경 등에 관계되는 비용부담의 명확화,<sup>23)</sup> 여행업자에 의한 해제권의 조정, 계약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여행자의 노력의무,<sup>24)</sup> 손해 발생시의 여행자의 신속한 통지 노력의무,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명확화,<sup>25)</sup> 여행업자의 관리 대상 외의 사유에 의한 손해책임 불가 규정 등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국외여행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여행업자의 책임,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계약체결 거절, 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등의 정산, 손해배상, 여행계약의 해제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체결하는 여행업무의 취급에 관한 여행계약에 대해 여행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가 기준으로는 여행업자의 여행업약관이 여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고, 적어도 여행업무의 취급요금, 기타 여행자와의 거래에 관한 금전 수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및 여행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의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내용의 적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의2). 표준여행업약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하여 공시한 경우(이를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를 포함)에 여행업자가 표준여행업약관과 동일한 여행업 약관을 정하거나 실제 정한 여행업약관을 표준여행업약관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한 여행업자에 대해서는 그 여행업약관에 대해서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법 제12조의3).

또한 표준여행업약관은 여행거래조건에 관해서 여행자에게 설명의무가 있고, 설명 시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여행에 관한 서비스 내용, 여행자가 여행업자 등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성명, 그 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은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

- 
- 23) 여행 현지에서의 불가항력 등에 의한 여정변경이나, 운송기관, 숙박기관 등의 취소료가 여행자의 부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24)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자의 권리의무 기타 계약내용에 대해서 여행자도 계약이행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간의 동등한 계약이행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 25) 응급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긴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 부담임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입장에서는 긴급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경비 범위에 대한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항을 서식형태의 교부 대신 전자정보처리 방식과 기타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사항에 의해 해당 서면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여행업자의 보상제도로는 특별보상제도와 여정보증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보상제도<sup>27)</sup>라 함은 여행업자에게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여행자가 기획여행 중에 급격,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해 신체, 생명, 소지품의 피해를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여정보증제도<sup>28)</sup>라 함은 여행업자에게 책임이 없어도 계약서면에 기재한 중요한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은 제외)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변경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특별보상제도의 세부내용으로는 신체손해에 관한 특별보상의 확충과 면책(보상하지 않는 사고의 이유)의 조정, 기획여행에 참가 중 중간에 빠지는 부분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손해에 관한 특별보상에서 통·입원 위로금의 지불액은 다음과 같다.

〈표 1〉 통·입원 위로금의 지불액

기간 및 일수	통원 위로금		입원 위로금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7일 미만	1만 엔	2만 엔	2만 엔	4만 엔
7일 이상 90일 미만	2.5만 엔	5만 엔	5만 엔	10만 엔
90일 이상 180일 미만	5만 엔	10만 엔	10만 엔	20만 엔
180일 이상			20만 엔	40만 엔

※ 출처 : 国土交通省総合政策局旅行振興課, 「旅行業法令·約款」改正について, 2005.

여행계약과 여행업종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분을 정리하면, 기획여행계약으로 해외 모집형기획

26) 日本旅行業法 施行規則 第12條4 및 第12條5 참조.

27) 특별보상규정은 여행업자의 책임에 대한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기획여행참가 중 여행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불하는 특별보상에 대한 여행업자측의 지불책임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덧붙여,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및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 '지진, 분화 또는 해일'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

28) 여행업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미리 규정에서 제외되는 변경을 제외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일정한 변경보상금을 여행업자가 지불하는 제도가 여정보증제도로서, '여행 개시일 또는 종료일의 변경', '입장하게 되어 있는 관광지, 관광시설, 사용예정을 하고 있던 레스토랑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시설의 낮은 요금의 것에 대한 변경',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출발 또는 도착지의 변경', '투어 제목 중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등 변경보상 대상항목이 지급 한도액과 동시에 정해져 있다.

여행계약, 국내 모집형기획여행계약, 수주형기획 여행계약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수배여행계약, 여행상담계약, 도항수속대행계약, 타사 실시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대리체결, 타사 실시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대리체결, 타사 수배여행계약의 대리체결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업무범위와 연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여행계약 구분과 업무범위

여행계약과 취급구분		여행업의 업무범위 등			
		제1종	제2종	제3종	여행업자 대리업
기획여행계약	해외 모집형기획여행계약	○	×	×	○* 제1종 대리업
	국내 모집형기획여행계약	○	○	×	○* 제1, 2종 대리업
	수주형기획여행계약	○	○	○	○* 제1-3종 대리업
수배여행계약		○	○	○	○*
여행상담계약		○	○	○	×
도항수속대행계약		○	○	○	○*
타사 실시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대리체결		○	○	○	○*
타사 실시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의 대리체결		×	×	×	×
타사 수배여행계약의 대리체결		×	×	×	×
영업보증금(최저액)		7천만 엔	1,100만 엔	300만 엔	-
여행업무 취급관리자		영업소에 있어 국내, 해외의 업무범위에 맞추어 국내 혹은 종합관리자를 선임			

※ 출처 : 国土交通省総合政策局旅行振興課, 「旅行業法令・約款」改正について, 2005.

※ 주 : \* 표시는 소속여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의미함.

### III. 여행업자의 의무와 책임

#### 1. 여행업자의 의무

여행업자는 여행계획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성·불명확성을 미리 여행자에게 주지시켜

야 한다.<sup>29)</sup> 예컨대, 해외여행 시에 이용하게 될 항공기가 안정상 문제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제공 내지 설명의무를 진다.<sup>30)</sup> 이와 관련해서 일본 여행업법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기획여행계약, 수배여행계약, 기타 여행업무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자가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업무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sup>31)</sup> 거래조건에 대해서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여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자가 여행업자 등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에 관한 사항,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성명, 기타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2)</sup> 이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여행업무는 업무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설명서면에 관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 적당한 서면에 실질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여행자에게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면 팸플릿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모든 여행계약에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여행상담업무에 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여행상담에 응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 되어 운송이나 숙박 등에 대한 여행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면의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행업자는 운송·숙박 서비스 제공자의 선임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행업자가 현지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나 거래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업자가 처음 이용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현지의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이다.<sup>33)</sup> 그러나 여행업자는 그 문제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 것이 여행계획상 필요불가결한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행업자는 사전설명과 여행의 각 단계의 위험 등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의 안전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배려의무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하여야 할 고지의무 중에는 기획여행 주최자의 보상책임으로 보전될 수 없는 치료비나 입원비 등의 여행손해와 섭외 소송의 위험과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서의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등의 소송위험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보전할 수 있는 여행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위

29) 廣岡裕一, 「旅行契約の考え方と認識」, 『政策科學』 10-1, 2002, 98면 이하 참조.

30) 高橋 弘, 「旅行の法律問題」, 『現代企業法講座』 第4卷, 1985, 269면.

31) 日本旅行業法 施行規則 第25條.

32) 日本旅行業法 施行規則 第25條3.

33) 堀竹 學, 「企劃旅行契約の法的性質」, 『北東アジア研究』 第18·19合併號, 2013. 3. 39면 이하 참조.

무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sup>34)</sup> 그리고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이러한 의무이행을 믿고 여행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여행업자는 전문가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진다.<sup>35)</sup>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된다. 즉, 쾌적하여야 할 여행이 불쾌감을 줌으로써 입은 손해도 배상되어야 한다.

## 2.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팸플릿의 기재 또는 여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여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여행이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여행자는 여행업자에 대해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36)</sup><sup>37)</sup>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도 표준여행업약관의 특별보상규정에 따라, 생명·신체 및 수하물에 피해를 입힌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미리 결정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에 있어서 민사책임

- 
- 34) 여행업자의 보험에 대한 설명 및 가입권고의무의 이행은 사고 발생 후,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5) 東京地判 1989. 6. 20, 判例時報 1341. 20; 여행자가 해외 주최여행중에 버스전복 사고로 사상을 당하여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업자가 여행에 관한 전문업자로서 여행전반에 관한 것은 물론 해당 주최여행에서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인 모든 조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이고,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기획하고 실시하는 주최여행의 안전성을 신뢰하여 주최여행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행업자는 주최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주최여행계약상 부담하는 부수의무에 의하여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여행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로,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와 검토를 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실시할 때 부딪히게 되는 위험을 배제하여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로서, 大阪高判 1985. 4. 18, 判例タイムズ 559. 133; 東京地判 1988. 12. 27, 判例時報 1341. 20 참조.
- 36) 堀竹 學, 「企劃旅行契約の法的性質」, 『北東アジア研究』第18·19合併號, 2013, 3, 40면 이하 참조.
- 37) 東京高判 1980. 3. 27, 判例時報 962. 115;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미리 약속한 해외여행의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일정이 실제상 차이가 생기자 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대하여 여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에서 명시하는 여행일정에 따라서 운수기관 및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대리 또는 위탁매매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여행업자는 본건 여행에서 숙박지와 항공편을 여행계약의 내용과 달리 일부 변경을 하였다면 여행계약 의한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공회사에서 항공권을 과잉 예약함으로써 본건 여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는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신혼여행의 숙박지가 호텔에서 취사시설이 없는 콘도미니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은 부득이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행업자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여행자에게 그 설명을 대만히 하였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神戸地判, 1994. 1. 22, 判例時報 1473. 125).

을 부담할 때에는 그 책임에 기인하여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여행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당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한다(표준여행업약관 제29조 제2항). 실제로 손해보상의 무는 여행보험에 의하여 체결되며, 이 여행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여행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여행업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sup>38)</sup>

### 3. 여행업자의 면책약관

여행업자는 특약 또는 약관에 의하여 여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자기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하는 약관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중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관을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이러한 약관을 토대로 여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39조와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의 면책에 관한 민법 제572조 등 개개의 거래유형에 따라 면책약관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일반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 제90조의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 내지 신의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약관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볼 때 고의·중과실에 대한 면책은 무효이고 그 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sup>39) 40)</sup>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인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이며(약관법 제6조 제1항), 면책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해제 및 해지조항, 급부변경 내지 대행조항, 제소금지 조항 등의 개별적인 약관은 개별적인 약관법의 통제를 받는다(동법 제7조 또는 제14조).

## IV. 나오며

여행계약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우선 여행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여행계약법을 제정함

38) 이승길, “중개계약”,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2009, 64면.

39) 山本 豊, 「免責條項の内容的規制のため基準について」, 『私法』 第49號, 1987, 209면.

40) 日本 標準旅行業約款 第23條, 第27條 참조.

으로써 여행자와 여행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거나,<sup>41)</sup> 여행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여행업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여행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민법의 해석을 통한 해결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의 여행계약에 관한 법제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규제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증가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약관과 계약법의 일반원칙과 이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여행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공평한 해결이나 여행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행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행계약에 관한 법제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② 여행계약상 급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행을 총괄하는 여행업자가 여행자보다 우위에서 상세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여행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여행업자에게 여행계약의 체결과정부터 여행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여행자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문서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여행과 체류를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본 여행업법의 관련 규정 등은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③ 여행자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여행업자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업자에 의한 여행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이 여행 도중에 불가능하게 될 경우, 여행업자로 하여금 미리 적절한 담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여행자가 무사히 여행지로부터 귀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여행자가 여행 도중 뜻하지 않게 신체사고나 재산사고가 발생할 경우,<sup>42)</sup> 여행업자로서는 그 사고가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이든 아니든 여행자에게 협력과 필요한 처리를 다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1) 독일은 여행계약에 관한 수십 년간의 학리적 연구와 판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1979년에 직접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법전 안에 '도급하고 유사한 계약'의 절에 '여행계약(Reisevertrag)'이라는 제목으로 11개 조문을 삽입하였다. 그 후 1994년에는 EU의 '포괄여행에 대한 EU지침'의 영향을 받아서 종전보다 소비자보호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EU지침에 따라 여행계약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42) 예를 들면, 여행 현지에서 갑작스런 질병이나 자유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지갑이나 여행캐리어를 분실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등과 같은 신체사고나 재산사고를 당할 수 있다.

④ 여행업자는 여행 현지의 사정 등으로 본래의 여행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sup>43)</sup> 다만, 여행업자는 임의로 여행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권을 인정하여야 한다.<sup>44)</sup> 이러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여행내용을 원하지 않는 여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가 따른다.<sup>45)</sup> 이와 관련해서 일본 여행업자에게 책임이 없어도 계약서면에 기재한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일정한 변경보상금을 지불하는 여정보증제도를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⑤ 마지막으로, 민법개정안의 여행계약에 대한 입법 배경을 살펴볼 때, 여행계약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율을 민법전 안에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의 필요성 때문에 입법화가 되었다면, 아직까지 여행계약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업에 대한 위상과 여행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행계약의 특성과 발전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여행계약은 민법상 별도의 전형계약으로 창설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본다.<sup>46)</sup>

**박 재 훈**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43) 예를 들면 기상악화, 도로사정, 현지의 정치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의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4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는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박,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 관광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5) 김민중, “민법개정을 통한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와 관련한 과제”, 법학연구(통권 제4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217면 참조.

46) 拙稿, “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책임제한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46권 제1호, 2011. 3, 252면.

## 참고문헌

- 김민중, “민법개정을 통한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와 관련한 과제”, 법학연구 통권 제4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박재훈, “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책임제한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46권 제1호, 2011.
- 법무부, 여행자 권리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 공청회, 2013.
- 이승길, “중개계약”,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2009.
- 高橋 弘, 「旅行の法律問題」, 『現代企業法講座』第4卷, 1985.
- \_\_\_\_\_, 「旅行業約款-主催旅行契約を中心として」, 『法律時報』第54卷 第6號, 1982.
- 廣岡裕一, 「旅行あつ旋業法の制定と旅行業法への改正 - 1952年の制定と1971年の改正 -」, 『政策科学』11- 1, 2003.
- \_\_\_\_\_, 「旅行契約の考え方と認識」, 『政策科学』10-1, 2002.
- \_\_\_\_\_, 「旅行業法の變遷 - 旅行業法に改題後の1982年と1995年の改正-」, 『政策科学』13-1, 2005.
- 堀竹 學, 「企劃旅行契約の法的性質」, 『北東アジア研究』第18・19合併號, 2013.
- 島十四郎, 「旅行あつ旋契約(手配旅行契約)・主催旅行契約」, 『現代契約法大系』第7卷, 1985.
- 山本 豊, 「免責條項の内容的規制のため基準について」, 『私法』第49號, 1987.
- 森住正明, 「旅行契約の特殊性と旅行業法に関する一考察」,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第15号, 2009.
- 日本旅行業協会(JATA), 『數字が語る旅行業 2013』, 2013.
- 佐々木正人, 『旅行の法律學』, 日本評論社, 1996.
- 香取幸一, 「旅行業法と規制緩和に関する一考察」, 『玉川大学経営学部紀要』第19号, 2012.